

5. 2003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결 과 보 고 서

2003 . 12 . 16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1월 25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3.12.16)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황 의 진)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매 입】

승인2동 청사 및 문화·복지·체육·행정 등에 적합한 건물로서 주민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위치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함.

【매 각】

창덕궁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의 위치, 형태상 활용하기 곤란한 잡종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다.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변경요청 사유

- ☐ 승인2동 청사가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새로운 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 창덕궁 관리사무소에서 관람객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폐지 결정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임

나. 변경내용

< 취 득 >

(단위:㎡,천원)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대지 건물	승인동178-167 승인동178-167	649.6 1,658.19	4,141,282 558,718	2003년 하반기	승인2동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복지시설 등 복합 청사를 확보하여 주민편 리 도모	

< 매 각 >

(단위:㎡,천원)

재산의 표시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대지	와룡동3-17	524.3	487,599	2003년12월	재산의 위치, 형태상 활용하기 곤란한 잡종재산으로 2003년 제4차 공유재산 심의회(03.9.4)시 용도폐지 결정된 토 지로서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 코자 함	

다. 대상부지 및 건물현황

<취득 대상부지 및 건물>

☐ 위 치 : 승인동 178-167☐ 규 모 : 대지 649.6㎡(196평), 건물 1,658.19㎡(502평)☐ 도시계획 : 도시지역, 준 주거지역(승인5구역재개발지구 및 왕산로와 근접)☐ 여 건

○ 부지면적이 196평의 정방형부지로서 왕산로에 인접하고 차량진출·입 용이함

○ '96.6.3 준공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건물상태 양호하여 다소의 리모델링 비용 투자로 어린
이집 유치 등 복합청사로 활용이 가능

<매각대상 부지>

☐ 위 치 : 와룡동 3-17(종로1·4가동)☐ 면 적 : 524.3㎡(158평)☐ 도시계획 : 공원☐ 현 황○ 창덕궁 내 편입된 대지로서 정방형의 토지로 창덕궁 관람객에게 주차장 및 휴식공간지로 사용
하고 있음○ 2003년 9월 4일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시 용도폐지 결정되었으며 재산의 위치, 형태상 활용
하기 곤란한 잡종재산임

라. 검토의견

< 승인2동 청사 매입 >

- ☐ 승인2동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당초의 계획은 승인동 226-2의 부지를 매입 신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금년 9월 제134회 임시회의시 승인 가결된 바 있으나, 위치, 환경, 매입가격 등에서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은 조건의 대체부지 및 건물이 발굴됨에 따라 이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 승인동 178-167의 대체부지는 196평의 정방형으로 동청사 건립 적정 규모인 150~200평에 합당하고 차량 진출·입 등 주민접근이 아주 용이한 위치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경미한 개·보수만으로도 복합 동청사로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건물 신축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따라서 간단한 리모델링만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합청사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잡종재산 매각 >

- ☐ 매각대상인 와룡동 3-17 토지는 2003년 9월4일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시 용도폐지 결정된 토지로서 현재 창덕궁 내 편입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창덕궁 관리사무소에서 관람객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원녹지과, 토목과 등 유관부서에서도 활용계획이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매수를 희망하는 문화재청에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